

束草市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5. 2. 21.

내 무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2월 7일 속초시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 95. 2. 21)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가. 제안이유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법2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적용범위는 주차장법 예정하는 교통관련사업에 한하여 적용
(안 제1조)
-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 관련 사업의 수입으로 함.
(안 제2조)
- 세출은 노상및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안 제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의 확보와 기존 주차장의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의 독립성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은?	○ 노상주차장은 도로면적이 넓고 그 지역에 주차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별도로 설정,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임.
○ 도로망을 확충하면은 주차장으로 변해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받으면 양성화가 되므로 대처방안은?	○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 주차장 기능으로서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설치 검토하겠음.
○ 상주인구 10만이하의 도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확보 방안은?	○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주차요금 과태료, 견인료,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등 11개항의 수입으로 충당함.

5. 討論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 없 음

7. 審査結果 :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첨 부 :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끝.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330

제출연월일 : '95. 2. .

제출자 : 속초시장

1. 제안사유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적용범위는 주차장법에 정하는 교통관련사업에 한하여 적용(안 제1조)
-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 관련 사업의 수입으로 함(안 제2조)
 -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의한 주차요금
 -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 과태료, 도로점용료
 - 국·도비 보조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 세출은(안 제3조)
 - 노상 및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3. 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주차장법 특별회계의 설치 등)
- 교행 91100 - 1691 ('94. 10. 4)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지침
 - * 상주인구 10만이하의 도시에는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설치 운영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동법 제8조제1항 관련)
3.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동법 제19조 제5항 관련)
4.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동법 제24조의 2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동법 제30조 관련)
6.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 2관련)
7. 견인료(강원도 견인자동차운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8.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의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의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4. 기타 교통관련사업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